

농지개량행위

[] 신고서

[]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5일		
신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			
	전화번호					
	전자우편 송달 동의	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농지개량 신고 결과 등의 문서 송달에의 동의 여부 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				
	전자우편 주소					
농지현황	위치(지번)					
	면적(㎡)	구분	계	농작물 경작 농지		시설 부지 (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)
				답	전	
		농업진흥 구역				
		농업보호 구역				
	농업진흥 지역 밖					
개량내용	개량 행위	[] 성토 [] 절토				
	개량 규모	높이·깊이 (m)		면적(㎡)		
	성토재 종류 및 출처 (성토의 경우만 작성)	종류	[] 자연상태 토양 [] 순환토사 [] 그 밖의 재활용토사			
		출처	채취장소			
	취급업체					
	주변 피해방지 조치	[] 흙막이 또는 옹벽 [] 그 밖의 시설 설치 [] 해당 없음				
	사업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개량목적 (변경사유)						

「농지법」 제4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(변경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고 가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1) 사업시행자 2) 사업시행기간 3) 개량 농지의 위치 4)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(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,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·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합니다) 5)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6) 피해방지계획(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나.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(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) 다.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(성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변경신고 가. 제1호 각 목의 서류(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합니다) 나.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 절차

